
정책참고자료

2018-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
- _____ 4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방안 실시 '눈앞'

- 신고자 보호 '이행강제금' 제도 등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남아 -
- _____ 8

3 중소벤처기업부

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약속 이행계획 -
- _____ 11

4 교육부

지역 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_____ 17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 1월10일부터 23일까지 4개 권역에서 연구자와 소통 -
- _____ 22

6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합동공연 선보여 -
- _____ 27

7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

- 새해 첫 날, 전남 AI 방역 현장 점검 -
- _____ 32

8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35
◇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	

9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94만 5,000원~157만 3,770원 부담	39
- 고용노동부, '18년도「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시	

10 여성가족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42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11 국토교통부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44
주거복지 로드맵(18년 13만 호,22년까지 65만 호) 차질없이 추진	

12 해양수산부

스타 크루즈 입항 유치 성공. 시장 다변화 노력 성과 거둬	46
- 5만 톤급 크루즈선박 Aquarius, 올해 상반기 2차례(4.22, 6.24) 여수 입항 확정 -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

- 신년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서,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 2017년 광역지자체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 수는 ①경기 102,813명 ②서울 83,822명, ③부산 34,682명 ④인천 28,290명 ⑤경남 27,327명 등임
-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i)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ii)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 iii)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iv)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처리함으로써,
 -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의미를 밝히면서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전자서명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청구인명부”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4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방안 실시 ‘눈앞’

신고자 보호 ‘이행강제금’ 제도 등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남아

<개정안 주요내용>

보호 강화	•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국회·법원 증언, 고소·고발 포함) •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규정 신설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신고자 불이익 신속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행강제금, 화해 권고, 피신고자 쟁송제기권한 제한 등)
보상 강화	• 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확대(알게 된 날부터 2년→ 3년) • 국민권익위 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 근거 마련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

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 구조금 (救助金) :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이익(임금 손실 · 부득이한 이사 비용 · 소송 비용 등) 대상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법적기반 강화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개정목적	개정내용
보 호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현행) 권익위,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개정)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제67조제4호 신설)
	신고자의 불이익 신속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한 피신고자의 쟁송제기 권한 일부제한(제62조의4 신설) - 행정쟁송 제기기간 30일로 제한, 행정심판 제기 불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권고 또는 화해안제시(제63조의2 신설) -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	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제62조의6 신설)
보 상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확대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3년(제68조제5항)
	부패신고자 구조금(치료·이사·임금손실액 등) 제도 도입	(현행) 보상금 지급요건(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을 갖춘 경우에만 보상금 포함하여 원상회복 비용 청구 (개정) 보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을 신청가능(제68조제3항 신설)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행) 권익위 신고,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신고 (개정)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제68조제1항)
처 별	신고등의 방해 또는 취소 강요금지 규정 도입	신고등의 방해 또는 취소의 강요를 금지(제62조제2항 신설)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90조제2항제2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자의 처벌수준 강화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90조제1항제1호) (과태료 1천만원→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부당한 징계, 전보,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90조제2항제1호) (과태료 1천만원→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90조제1항제2호)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약속 이행계획 -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하였다.

-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하며,
 - * (우대내용) 대출한도 1억원(일반자금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
(지원대상) ①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 특화자금’(17 4,100→18.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우대지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며,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 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 가능

-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상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셋째,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1.6조원의 80%인 1.28조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

* 첫걸음기업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

-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여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한다

* (지원대상) 간이과세자, 신용 4~7등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

○ 넷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 소상공인 판로지원('18년 85억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 6천억원 중 1/4분기에 7,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다섯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고용노동부)

-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중도 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기존 은행창구·상담사와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 금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357)으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 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 지원	7,025	2.5만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7.12월
청년고용특별 자금(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00	7천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7.12월
성장촉진자금 (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 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6천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7.12월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 하여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200	1천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7.12월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 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8천개 내외	소공인	2017.12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110	3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7기) 2018.1월 (8기) 2018.5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50	10,000명	소상공인	2018.1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 지원	60	5,325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8.2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270	450개 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	2018.1월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중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 하여 점포환경 및 운영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 중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나들가게 육성사업 운영 지원	48	(나들가게) 1,000개 점포, (선도지역) 20개 지자체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8.1월
동네슈퍼 체인화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와 중소 유통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을 지원	38	15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18.2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이 유망·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21.5	50개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2018.2월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	85	8,000명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8.1월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 지원	30	3,000명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2018.1월

				폐업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2.5	10,000명	1인 소상공인	2018.1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 소공인 특화 지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제 품 판매촉진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85	300개사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제 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	51	120개 과제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변경내용

기 존 ('17년)		변 경 ('18년)	
경영안정 자금 (9,85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9,350억원)	경영안정 자금 (9,025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7,025억원)
	· 수출·고용특별자금 (5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수출소상공인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원) * 규모 대폭 확대 및 수출소상공인자금 폐지
성장기반 자금 (6,400억원)	· 소공인 특화자금 (4,100억원)	성장기반 자금 (6,800억원)	· 소공인 특화자금 (4,500억원) * 규모 확대(↑ 400억원), 고용지표 가점
	· 성장촉진자금 (2,300억원)		· 성장촉진자금 (2,300억원) * 소상공인 전용으로 변경
		소상공인 특별자금	· 매출연동 상환자금 (200억원) * 카드매출액과 자금 상환을 연동 소상공인 전용으로 편성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내용

구분 (규모)	대상	지원조건	
		금리	한도 / 기간
□ 경영안정자금 (9,025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7,025)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상 소상공인	기준금리 + 0.6%p	7천만원 / 5년
○ 청년고용특별자금(2,000)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청년 고용창출(만29세이하) 소상공인	기준금리 + 0.4%p	1억원 / 5년
□ 성장기반자금 (6,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4,500)	소공인 * 제조업 영위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 + 0.6%p	(운전) 1억원 / 5년 (시설) 5억원 / 8년
○ 성장촉진자금(2,300)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기준금리 + 0.4%p	(운전) 1억원 / 5년 (시설) 2억원 / 5년
□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원)			
○ 매출연동상환자금(200)	① 생계형 소상공인(간이과세자) ② 저신용(신용 4~7등급) 소상공인	기준금리 + 0.2~0.3%p	카드 매출액 200% / 7년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원→150만원으로 증액!
 - 1월 3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 * '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
-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0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17년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수)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4일(금)까지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 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지 역	주 소
서울 현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층
경기 현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102호
부산 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대구 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6길 47(북현동 573-13)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광주 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대전 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61호
강원 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18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 소득 8구간(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

지역인재장학금 2018학년도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사업기간) '14년~

□ 지원 대상

- (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17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
* '18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예정대학 포함
- (학생) '18년 1학년(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18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지원 방식

- 각 대학은 성적기준 충족자 혹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 (성적우수 분야)
 - (4년제)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특성화 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인재를 자체기준으로 선발
- (계속 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4.5(B학점, 80점) 이상
- (소득 기준) 기초 ~ 8분위 대상

□ 지원 범위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 재학기간*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치학계열 12학기(6년),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8분위 : 1년간(2학기) 지원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시 전 학기 내 등록금 전액 우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 1월10일부터 23일까지 4개 권역에서 연구자와 소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9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1월10일부터 1월23일까지 4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 ※ (수도권) '18.1.10(수) ~ 1.12(금), 서울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중부권) '18.1.15(월) ~ 1.17(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호남권) '18.1.18(목) ~ 1.19(금),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 (영남권) '18.1.22(월) ~ 1.23(화), 부산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 이번 설명회는 올해 19.7조원에 이르는 정부 R&D 예산 투자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자 작년과 달리 개최 권역을 확대하였다.

※ 2017년 부처합동설명회의 경우 서울, 대전 2개 권역에서 개최

□ 설명회 첫 날(10일), 과기정통부에서 2018년도 정부 R&D예산 주요 특징 및 R&D사업 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의 순서로 부처별 주요 R&D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한다.

○ 둘째 날(11일)에는 환경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셋째 날(12일)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사업 설명이 이어진다.

○ 아울러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절차는 없으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 인터넷생중계(1.10~12.) : <http://www.castmedia.kr/live/kistep> (웹)
<http://www.castmedia.kr/m/kistep> (모바일)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만들고,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합동설명회와 같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8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세부일정
2. ‘2018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포스터

○ 수도권 일정표 :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구 분	시 간	내 용
1월10일 (수)	10:00-11:00 (1h)	개 회 '18년 정부 R&D예산 주요특징 '18년 정부 R&D사업 관리제도
	11:00-13:00 (2h)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4:00-16:00 (2h)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6:30-17:30 (1h)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월11일 (목)	10:00-12:00 (2h)	환경부 사업 설명
	12:00-13:00 (1h)	교육부 사업 설명
	14:00-17:00 (3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2일 (금)	10:00-12:00 (2h)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2:00-13:00 (1h)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6:00 (2h)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 중부권 일정표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구 분	시 간	내 용
1월15일 (월)	10:00-11:00 (1h)	개 회 '18년 정부 R&D예산 주요특징 '18년 정부 R&D사업 관리제도
	11:00-13:00 (2h)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4:00-16:00 (2h)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6:30-17:30 (1h)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월16일 (화)	10:00-12:00 (2h)	환경부 사업 설명
	12:00-13:00 (1h)	교육부 사업 설명
	14:00-17:00 (3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7일 (수)	10:00-12:00 (2h)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2:00-13:00 (1h)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6:00 (2h)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 호남권 일정표 :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구 분	시 간	내 용
1월18일 (목)	11:00-12:30 (1.5h)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3:30-15:00 (1.5h)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5:10-17:40 (2.5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9일 (금)	10:00-12:00 (2h)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3:00-14:00 (1h)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5:00 (1h)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5:30-17:30 (2h)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 영남권 일정표 : 부산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구 분	시 간	내 용
1월22일 (월)	11:00-12:30 (1.5h)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3:30-15:00 (1.5h)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5:10-17:40 (2.5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23일 (화)	10:00-12:00 (2h)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3:00-14:00 (1h)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5:00 (1h)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5:30-17:30 (2h)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2018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및 장소

수도권
2018.1.10(수) ~ 1.12(금), 서울/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중부권
2018.1.15(월) ~ 1.17(수),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호남권
2018.1.18(목) ~ 1.19(금), 광주/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
영남권
2018.1.22(월) ~ 1.23(화), 부산/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장소 협찬: 송실대학교, 국립중앙과학관, 광주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조정센터
TEL 02-589-2209 / 2188 / 5246

수도권 일정

구분	시간	내용
1월10일 (수)	10:00-11:00	개회 '18년 정부 R&D예산 주요특징 '18년 정부 R&D사업 관리제도
	11:00-13:00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4:00-16:00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6:30-17:30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월11일 (목)	10:00-12:00	환경부 사업 설명
	12:00-13:00	교육부 사업 설명
	14:00-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2일 (금)	10:00-12:0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2:00-13:00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6:00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호남권 일정

구분	시간	내용
1월18일 (목)	11:00-12:30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3:30-15:00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5:10-17: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9일 (금)	10:00-12:0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3:00-14:00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5:00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5:30-17:30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중부권 일정

구분	시간	내용
1월15일 (월)	10:00-11:00	개회 '18년 정부 R&D예산 주요특징 '18년 정부 R&D사업 관리제도
	11:00-13:00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4:00-16:00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6:30-17:30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월16일 (화)	10:00-12:00	환경부 사업 설명
	12:00-13:00	교육부 사업 설명
	14:00-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17일 (수)	10:00-12:0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2:00-13:00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6:00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영남권 일정

구분	시간	내용
1월22일 (월)	11:00-12:30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설명
	13:30-15:00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설명
	15:10-17: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설명
1월23일 (화)	10:00-12:0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 설명
	13:00-14:00	국토교통부 사업 설명
	14:00-15:00	해양수산부 사업 설명
	15:30-17:30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

인터넷생중계(1.10-12): 웹링크 URL <http://www.castmedia.kr/live/kistep>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링크 URL <http://www.castmedia.kr/m/kistep>

모바일 생중계 바로가기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합동공연 선보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월 6일(토) 오후 5시부터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 강릉문화원(원장 최돈설)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합동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다'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세계인들에게 화합과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합동공연에는 강원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5개 팀(원주, 강릉, 정선, 평창, 인제)의 3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멋진 연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은 이번 합동공연에서 올림픽을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인제 연합팀은 '열정의 도약'을 주제로 '올림픽 스피릿'과 '아리랑랩소디'를 연주한다. ▲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강릉-정선 연합팀은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클래식 2곡(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차이콥스키의 명곡 메들리)을 연주한다. 그리고 ▲ 원주-강릉-정선-평창-인제 오케스트라 5개 팀이 모두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은 '하나 된 세계'를 주제로 5곡을 연주한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이 연주하는 민요 <배 띄워라>와 <신 강원도 아리랑>은 국악인 오정해 씨와 강릉시립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국악과 클래식의 아름답고도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할 계획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와 같은 ‘꿈의 오케스트라’는 강원도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화합과 도전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엘 시스템아(EI Sistema): 베네수엘라에서 빈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음악교육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상호학습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등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유도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전과 성취 그리고 화합을 가치로 삼는 올림픽 정신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앞으로 나가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여정과 닮아있다.”라며,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무대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에 함께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합동공연 행사 안내
2.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합동공연 포스터

□ **행사개요**

- 행 사 명 :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다
- 공연일시 : 2018. 1. 6.(토) 17:00 ~ 18:30
- 공연장소 :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 강릉아트센터 <https://www.gn.go.kr/artscenter/index.do>
- 공연 사회자 :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꿈의 오케스트라-정선 박종필 음악감독

- 참여기관 : 꿈의 오케스트라_강원 (원주·강릉·정선·평창·인제)

no	거점기관명	오케스트라명	단장	감독	단원	강사	총원
2기	원주문화재단	꿈의오케스트라 원주	원창묵	김진수	56명	11명	67명
3기	강릉문화원	꿈의오케스트라 강릉	최돈설	조가현	62명	13명	75명
3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꿈의오케스트라	최종천	박종필	48명	10명	58명
4기	평창문화예술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김도영	장한솔	36명	8명	44명
4기	인제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인제	이순선	강영미	54명	11명	65명
총 원					256명	53명	309명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 후 원 : 강릉시, GKL사회공헌재단
- 협 력 : 원주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인제군문화재단

□ **레퍼토리**

열정의 도약 : A Leap of Passion		
올림픽 스피릿 - 존 윌리엄스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인제	장한솔 음악감독 (평창)
아리랑 랩소디 - 이지수		
꺼지지 않는 불꽃 : Endless Flame		
위풍당당 행진곡 - 엘가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강릉, 정선	김진수 음악감독 (원주)
명곡 메들리 - 차이코프스키		
하나 된 세계 : World Connected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 푸치니 협연 _ 강릉시립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강영미 음악감독 (인제)
챔피언스 - 에릭 레비 협연 _ 강릉시립합창단		조가현 음악감독 (강릉)
단존 No.2 - 마르케즈		
배 띄워라 - 민요 협연 _ 오정해		
신 강원도아리랑 - 민요 (작곡 송원구·강태숙) 협연 _ 오정해 / 강릉시립합창단		
※ 평창의 꿈 협연 _ 오정해 / 강릉시립합창단 / 단원 160명		
* <꿈의 오케스트라>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사회의 아동·청소년이 기존의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적 감수성 함양 중심의 음악 활동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면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0년 전국 8개 거점 기관으로 시작, 현재는 40개의 거점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원 기획연주

PyeongChang 2018

El Sistema Korea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
평창의 겨울을
수놓는다

2018. 1. 6 토 17: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특별출연> 국악인 오정해 · 강릉시립합창단

PROGRAM 프로그램

01 열정의 도약

장한솔 |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음악감독

올림픽 스피릿 - 존 윌리엄스
아리랑 랩소디 - 이지수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 인제

02 꺼지지 않는 불꽃

김진수 |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음악감독

위풍당당 행진곡 - 엘가
명곡 메들리 - 차이코프스키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 강릉 · 정선

03 하나 된 세계

강영미 | 꿈의 오케스트라 인제
음악감독

조가현 |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음악감독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 푸치니
챔피언스 - 에릭 레비
단존 No.2 - 마르케즈
배 띄워라 - 민요
신 강원도아리랑 - 민요(작곡 송원구·강태숙)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후원 강릉시 GKL사회공헌재단 협력 원주교육지원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평창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김영록 장관,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

- 새해 첫 날, 전남 AI 방역 현장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새해 첫 날 AI 방역 민관합동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 전남 나주시청 AI 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남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나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해에는 AI를 비롯한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까지 총 8건의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앞으로 1주일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각 지자체에서 AI 차단방역을 위한 점검시에는 반드시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농장별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현재까지는 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산란계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간이킷트 검사 등 예찰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역관 이외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인 모임도 자제토록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파토록 당부하였다.

- 또한, 김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점을 엄중히 보아야 한다면, 40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하면서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전남 AI 방역현장 방문 계획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 1(월), 09:00~17:02
- 장 소 : 나주시청 AI 상황실 * 복장 : 민방위복
- 참석자 : 장관님, 전남도 권한대행, 나주시장, 영암·무안군 부단체장, 방역정책국장,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등
- 메세지 : ①전남 지역 예찰·소독·검사 등 방역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격려 및 근무 철저

□ 주요 방문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9:00~09:30	30'	① AI 상황점검회의(서울)	주재: 장관님
10:25~13:40	195'	○이동(서울청사 → 나주시청) * (10:25~12:36) KTX 서울역-나주역, (12:36~13:40) 나주역-나주시청(이동 10분 + 점심 54분)	주소 : 전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3:40~14:40	60'	② 전남도 AI방역상황 점검 * (메세지) ①전남 지역 예찰·소독·검사 등 방역 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격려 및 근무 철저	수행: 방역정책국장 * 발표순서 : 나주 → 영암 → 무안 * 브리핑 : 부단체장
14:40~17:02	142'	○이동(나주시청 → 용산역) * (14:40~14:55) 나주시청-광주송정역, (15:02~17:02) KTX 광주송정역-용산역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 2017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써,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나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 방안*에 의해 2018년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გადა 이월시 불이익 부과

-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 시행될 수 있다.

< 2030 로드맵 수정 · 보완 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하였으며,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되었다.

□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 · 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 국조실 · 기재 · 과기 · 외교 · 농림 · 산업 · 환경 · 국토 · 해수부 · 산림청

-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민 · 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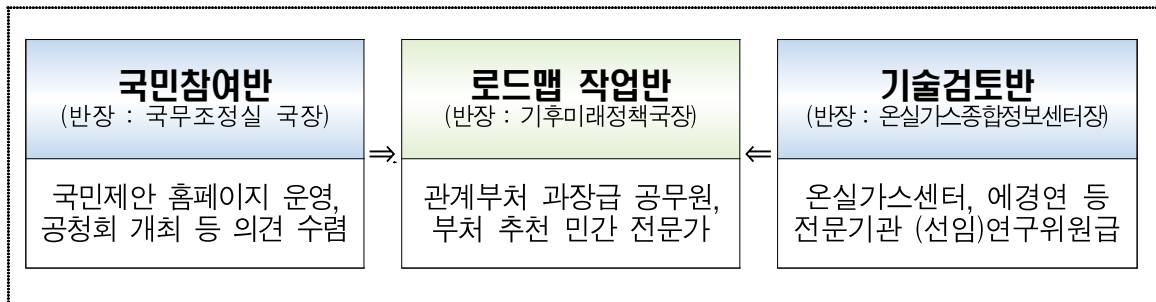
붙임 5. 2030 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한 민·관 공동작업반 운영방안.

(**民 : 국민참여반**)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설·운영, 공청회 개최, 국회 협업 등을 통해 로드맵 관련* 국민 의견 수렴(반장 :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 (예시) 기후변화의 심각성, 온실가스 감축 강화 필요성, 비용부담 수용성 등

(**研 : 기술검토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위원급 이상) 공동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기술적 사항 검토·조정(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官 : 로드맵 작업반**) 관계부처 공무원(과장급) 및 민간 전문가(부처 추천, 20인 이내)가 국민참여반 및 기술검토반의 내용을 종합하여 로드맵 수정안 초안 마련·조율(반장 :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 수정안 마련

* 공청회, 국회 포럼, 부문별 설명회 등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94만 5,000원 ~ 157만 3,770원 부담

- 고용노동부, '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 '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참고>

-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 3.2%,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 및 민간기업 2.9%,
- ◆ (부담금 납부대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공무원 부문은 '20년부터 적용)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을 고시하였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 적용

☞ '18년도 적용 월 환산 최저임금액은 1,573,770원으로 그 60%는 944,262원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 · 공공기관 ·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 · 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

현 행 (2017년)		변 경 안 (2018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812,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945,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860,72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001,70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974,4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134,0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136,8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323,0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352,230원 (최저임금액의 1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573,770원 (최저임금액의 100%)

-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고시(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단위: 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	1,134,000	1,323,000	1,573,770

※ 비율에 따른 인원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 ①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법 제3조제2호의2 신설)
- ②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증진책 포함(법 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 ③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 포함(법 제20조제2항 신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구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2016년 27.9%로 가장 높다는 점, 안전과 건강문제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가정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u> 3. 4. (현행과 같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u>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주거복지 로드맵(18년 13만 호, 22년까지 65만 호) 차질없이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 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준공기준) : 단위 만호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준공기준) : 단위 만호



-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13~'17년에는 15만호)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2018년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스타 크루즈 입항 유치 성공...시장 다변화 노력 성과 거둬

- 5만 톤급 크루즈선박 Aquarius, 올해 상반기 2차례(4.22, 6.24) 여수 입항 확정 -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룡-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룡-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상반기 중 두 차례(4.22, 6.24) 여수항 입항 확정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룡-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올해 상반기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룡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룡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관람 등을 즐길 예정이다. 저녁에는 여수 향토 음식을 즐긴 후 여수 박람회장에서 박람회장의 명물인 빅오쇼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진다.

해양수산부는 첫 항해에 앞서 여수항 입항여건과 여수·순천 주요

관광지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선사 관계자가 여수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선사 측도 이에 흔쾌히 응하여 1월 중 실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올해 상반기 2차례 입항 성과가 좋을 경우 입항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여수시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심분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지자체, 항만공사 및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만, 일본 등에서 포트 세일즈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만 최대 여행사인 라이언여행사와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14만톤, 정원 3,560명)’의 올 3월부산항 입항을 확정짓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에도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현지에서의 포트 세일즈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해외 크루즈 선박의 입항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quarius 크루즈 제원 및 항로 >

					
건조연도	총톤수	전장(m)	폭(m)	승객정원	승무정원
1993년	51,039 GT	229.8	28.5	1,511	756
기룡→여수→나가사키→기룡 (여수입항 18.4.24, 6.26)					

참고

Star Cruise - Superstar Aquarius 현황

□ 선박 제원 및 항로



건조연도	총톤수	전장(m)	폭(m)	승객정원	승무원	기류→여수→나가사키→기류 (여수입항 18.4.24, 6.26)
1993년	51,039 GT	229.8	28.5	1,511	756	

□ 주요 시설

